

#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066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7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이유

-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(2019. 1. 1.~2019. 12. 31.) 만료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# 3. 위탁근거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(심의회의 업무)
- 「고성군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 규정」

### 4. 주요내용

- 시설개요
  - 고성군공설화장장

(기준: 2019. 9. 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(m <sup>2</sup> )	화장로수	화장능력	방식	비고
고성군 공설화장장	상리면장치로 220-163	1985.10.	102	2	6구/일	무연무취 (등유)	

• 고성군공설봉안당

(기준: 2019. 9.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 <sup>2</sup> )	봉안능력 (기)	봉안기수	잔여	비고
고성군 공설봉안당	상리면 장치로 220-163	1991.12	482.19	4,206	3,529	677	

• 장기공설공원묘지

(기준: 2019. 9.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 <sup>2</sup> )	매장능력 (기)	매장기수	잔여	비고
장기공설 공원묘지	동해면 장기리 산209-2번지	2002.1	7,381	382	258	124	

• 장기공설봉안묘

(기준: 2019. 9.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 <sup>2</sup> )	봉안능력 (기)	봉안기수	잔여	비고
장기공설 봉안묘	동해면 장기리 산209-2번지	2002.1	-	210	27	183	

○ 현위탁자 현황

소재지	시설명	위탁처	비고
상리면 장치로 220-163	고성군 공설 화장장 및 봉안당	(유)자은리영생장의사 (대표:정대환)	화장장 및 봉안당 소재 자은마을 설립 유한회사
동해면 장기리 산209-2	장기공설공원묘지 및 봉안묘	정동연 (개인)	지역주민

○ 위탁개요

- 위탁 운영기간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  
※ 기 위탁내역: 2019. 1. 1. ~ 2019. 12. 31.(1년)
- 위탁내용: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

5. 기대효과

- 시설운영의 특성상 사체와 유골 처리 업무로 일반 개인, 보통 인부가 수행하기 어려워 장사관련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기술성, 전문성 등 확보

6. 향후 추진계획

- 2019. 11월: 위탁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접수
- 2019. 11월: 사업계획서 등 검토, 심의
- 2019. 12월: 재위탁 계약 및 위탁 계약증서 발급

7. 참고사항

-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: 붙임 1
- 관계 법령 : 붙임 2

8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동의안은 고성군 공설 장사시설(고성군 공설화장장, 고성군 공설봉안당, 장기 공설공원묘지, 장기 공설봉안묘) 위탁기간(2019. 1. 1. ~ 2019. 12. 31.)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 운영을 민간에 3년간(2020. 1. 1. ~ 2022. 12. 31.)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,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조례,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하며,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9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10. 토 론 : 없음.

11. 심사결과

- 2019. 10. 17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